

한-칠레 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-칠레 FTA	
발효일자		2004. 4. 1.	
협정국		칠레	
원산지 지증 명서	발급주체	수출자	
	서식	양국 간 통일 증명서식	
	유효기간	서명일로부터 2년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,000불 이하	
원산지결정기준 (부호)		A : 완전생산물품 B : 품목별기준 충족물품 C :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D : 세번변경특례 해당물품 (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)	
부가 가치 계산 방법	계산방법	직접법(BU), 공제법(BD)	
	부가가치기준	BU 30%, BD 45%	
	기준가격	조정가격(FOB)	
	비고	혼합주스 공제법 80% 이상	
역외 가공	품목	불인정	
	지역		
	가공비		
제3국발행시송장		원산지증명서 9번란(Remarks) 에 작성자 이름, 회사명, 주소 기재	
원 산 지 검 증	검 증	검증방법	직접
		검증주체	수입국 세관
	회 신	회신기간	30일 (서면 요청 시)
		회신주체	수출자 또는 생산자
	미회신조치		협정관세 적용 제한
	근거조항		제5.8조